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Inheritance among Married People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이정읍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김명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Master : Lee, Jung-Up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 : Kim, Myung-Cha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nheritance consciousness among married people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This study employed two complimentary research methods-survey and in depth interviews which were taken from married people over 50' in Seoul and Miryang, Kyungn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 First, most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agreed to the necessity of inheritance because it may help to improve children's household-finances and be a means to promote children's social position. Second, most of them want to succeed before they pass away and do in accordance with their will. Third, the consciousness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married people about the son-oriented inheritance and the lineal family-oriented inheritance is medial, and they don't want the equal-divided and the optional inheritance.

- ◆ key word: 중노년기 기혼남녀, 재산상속필요성,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

I. 서 론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학가족화 되면서 가족구조나 가족성원간의 인간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과거와 같이 가족간의 강한 혈연 유대관계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효의 근본으로 여겼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특히, 장남에게 호주승계와 함께 재산을 승계 하였으며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받은 이는 가족원에 대한 부양과 의무, 조상에 대한 제사 의무 등을 행하였다(최재석, 1983). 그러나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 여성의 지위향상 등으로 과거보다 부모가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졌으며, 자녀 또한 부모 부양의 의무와 조상제사에 대한 의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여중철, 1980; 한남제, 1997).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이나 가족학에서 보다는 경제학에서 재산상속에 대한 모델과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Kotlikoff & Spivak, 1991). 재산상속에 관한 국내연구는 법적 고찰, 역사적 고찰 및 소수의 실태조사(김종호, 1985; 신영호, 1987; 이동훈, 1980; 최재석, 1986; 한남제, 1997)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족학 분야의 상속의식에 관한 조사(문영소, 1996)와 미국 은퇴노인 가계의 재산상속을 분석한 홍공숙·김순미·김연정(1995)의 연구 외에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즉 상속이 가족문제, 가족문화 및 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족학적 측면에서의 재산상속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노년기는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되고 성숙된 시기로 단순히 자신과 자기세대의 이익과 번영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후손 및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는 기간이다. 즉 중노년기 기혼남녀들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따라 자신이 지난 자원이나 기술·재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후에도 사회적·개인적 공헌을 하고자 한다(김명자, 1998). 따

라서 이 시기의 기혼남녀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은 생성감의 실질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노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재산상속은 가족문화 및 제도, 가족형태 등에 따라서 상속여부, 상속시기, 상속방법, 상속대상 및 상속분이 달라지며, 재산상속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재산상속의식의 변화정도와 가족법에 나타난 상속제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현행 가족법에 나타난 재산상속

상속이란 용어는 'succession'과 'inheritance'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뉘앙스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를 '지위의 승계', 후자를 '재산의 승계'로 구별하고 있다(신영호, 1987). 전 근대사회에서 상속은 'succession'의 준칙이 적용되어 인격 및 지위의 계승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재산상속은 인격·지위계승에 따른 이면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행하여져 왔으나(박명희·정주원, 2000),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상속에 있어서도 재산의 승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재산상속이 중요한 승계제도로 인정되고 있다(김엘림, 1991).

여러 여성단체 및 진보적인 가족법학계를 중심으로 여성의 권한과 지위 향상을 위한 가족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족법 개정운동이 활발히 추진된 결과, 제4차 가족법 개정안이 199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김주수, 2000).

현행 가족법에 나타난 재산상속을 상속시기 및 방법, 상속대상, 상속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상속시기는 생전상속과 사망상속이 있으며 근

대적 상속제도는 사망상속을 원칙으로 한다. 상속방법으로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으며 가족법에서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상속이 법정상속에 우선한다(제1060조 이하 참조). 상속대상의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상속분은 비율에 따라 균분상속과 불균분상속으로 나누어지며 현행 가족법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009조 2항)(이경희, 1988).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여 아내와 남편을 평등하게 취급하였다(제1009조 2항). 한편 자녀의 상속분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여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가계를 계승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재산상속에서 우대 받을 수 없으며, 출가한 딸도 아들과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가족법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더 받을 수 있는 효도상속기여분제도를 신설하였다(김주수, 2000).

현행 가족법의 재산상속제도와 재산상속의식을 비교해 보면, 가족법에 나타난 재산상속의 기본원칙은 균분상속제인데 반해 재산상속의식은 여전히 가제도(家制度)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상속관행에 있어 완전한 균분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들다. 즉 현재 재산상속의식과 관행은 철저히 부계위주의 가계계승을 원리로 하는 가제도(家制度) 하에서 법제상의 균분상속보다는 여전히 장남위주의 상속이 보다 일반적이다(배종열, 1997).

2. 재산상속에 대한 선행연구

재산상속필요성에 관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재산의 사회환원보다는 자녀에게 상속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종열, 1997; 배희선, 1998; 이동훈,

1987). 문영소(1996)는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재산축척 및 사회경제적 적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재산상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명희·정주원(2000)은 부모는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함으로써 보상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하지만, 상속이후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 경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명한 재산상속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산상속시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가옥(1994)은 자녀에게 이미 재산을 물려 준 노인의 비율이 13.6%, 일부재산만 물려준 비율이 5.5%, 사후에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비율이 48.3%로서 사후상속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희선(1998)은 사전증여의 경우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 이상시에 책임질 수 있는 부양자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후상속을 더 원한다고 하였다. 반면 김종호(1985)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재산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재산상속방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배종열(1997)은 유언상속에 대하여 대부분이 말로만 이야기하고 문서로 남겨두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단지 0.9%에 불과하였다. 김종호(1985)는 농촌가족의 재산상속실태를 알아본 연구에서, 농촌가족 중에서 법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사회적 관행에 따른다고 하였다.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관하여 박명희·정주원(2000)은 여전히 장남우대의 불균등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딸에게는 결혼자금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재산이전만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박부진(1994)의 연구결과에서도 장남우대상속이 이루어지며 여자에게는 특별한 경우에만 상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재산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¹⁾

1) 성별

문영소(1996)는 남성이 여성보다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하기를 바라고 상속분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두어 남자에게 특별히 많이 주기를 원하며 사전상속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조정문(1990)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후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간의 불균등상속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연령

이동훈(1980)은 연령이 높을수록 장남이나 아들위주의 상속, 사전증여를 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결과(문영소, 1996; 배종열, 1997; 배희선, 1998)도 이와 일치하였다. 또한 배종열(1997)은 연령이 낫을수록 상속분에 있어 비록 차별적이지만 여자가 상속받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의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

3) 교육수준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재산상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낮은수록 장남단독상속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배종열, 1997; 홍공숙 외 2인, 1995). 문영소(1996)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하였다.

4) 은퇴여부

은퇴여부가 재산상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으나, 은퇴준비기간은 자신의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제적 지위를 위해 남기는 자산축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은퇴준비기간이 길면 은퇴후에 예상되는 소비효용 및 경제적 위험뿐 아니라 자신의 사망후 자녀들의 소비효용을 위해서

축적하는 총자산이 증가하게 되지만, 은퇴준비기간이 짧으면 자녀의 소비효용보다 자신의 소비효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자산이 유산상속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진다(Cooney & Uhlenberg, 1992).

5) 자산과 소득

대부분의 연구에서 피상속인의 자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재산상속 가능성과 상속액이 많다고 하였으며(배종열, 1997; 배희선, 1998; 조정문, 1990; 홍공숙 외 2인, 1995; Cox, 1987), Davies(1996)는 상위 20% 계층의 경우 자녀에게 불균등분배의 방식으로 계획된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나누어준다고 하였다.

6) 거주지

자녀에게 남길 재산상속액은 거주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장남위주의 전통적인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김종호, 1985; 배종열, 1997). 농촌지역에서는 다른 형제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자녀는 상속에서 배제 혹은 차별받는 경향이 산업화 이후에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경향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배종열, 1997; 이광규, 1990).

7) 출생순위

문영소(1996)는 출생순위가 장남이나 장녀인 경우 차남이나 차녀인 경우보다 아들위주의 상속을 하는 경향이 높으며, 상속분에 있어서도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한다고 하였다.

8) 가족형태

배희선(1998)은 딸들로만 구성된 가족보다는 아들들로만 이루어진 가족에서 아들이 가계를 계승하고, 부모의 노후부양을 책임질 것이라는 보수적 성향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양하려 한

1) 지면관계상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이론적 배경이 상당부분 생략되었음. 상세한 내용은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이정읍, 2001)"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고 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2.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중인 중노년기 기혼남녀이다. 중노년기 기혼남녀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생애주기 단계에서 중노년기는 은퇴를 준비중이거나, 이미 은퇴한 후 노

후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며, 또한 자녀들이 독립을 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며, 직접적으로 상속을 계획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조사도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은퇴여부, 자산, 막내자녀 결혼여부, 거주지, 출생순위, 가족형태, 종교를 포함한 총 10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재산상속의식은 총 20문항으로 재산상속필요성 3 문항,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 2문항,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산상속필요성,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을 묻는 5개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고,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은 문영소(1996), 배종열(199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4)

변 인	구 分	빈 도(%)	변 인	구 分	빈 도(%)
성 별	남 여	149(49.0) 155(51.0)	막내자녀 결혼여부	기 혼 미 혼	96(31.6) 208(68.4)
연 령	50세 이상~55세 미만 55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	47(15.5) 150(49.3) 107(35.2)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163(53.6) 109(35.9) 32(10.5)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졸 이상	59(19.4) 129(42.4) 116(38.2)	출 생 순 위	장남/장녀 외동아들/외동딸 차남이하/차녀이하	118(38.8) 25(8.2) 161(53.0)
은 퇴 여 부	은 퇴 현 직	88(28.9) 216(71.1)	가 족 형 태	핵 가 족 부모가 있는 확대가족 자녀가 있는 확대가족	123(40.4) 51(16.8) 130(42.8)
자 산	1억 미만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10억 미만 10억 이상	36(11.8) 158(52.0) 52(17.1) 52(17.1)	종 교	기독교 천주교 불 교 무	65(21.4) 39(12.8) 107(35.2) 93(30.6)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적합한 문항을 수정·보완 및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상속대상을 아들위주의 상속과 직계혈연위주의 상속으로, 상속분을 균분상속과 임의상속으로 각각 2개 하위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용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중이며,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50세 이상 중노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 9월 1일부터 2000년 9월 25일 사이에 서울시와 경남 밀양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 하거나 연구에 부적절한 것을 제외한 총 304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산상속필요성,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등을 실시하였다.

3.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는 2000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본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주요 구성개념을 토대로 작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3번에 걸친 심층면접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자가 접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미 은퇴한 60세 이상의 기혼남녀 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는 달리 조사대상자가 모두 은퇴한 노인인 것은, 이미 상속을 하였거나 몇 년 내에 상속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은퇴한 노인이 면담에 진실하게 임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면접진행은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재산상속의식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회 면접조사에

<표 2>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의 하위요인별 문항내용 및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 항 내 용	문항수	α 계수
상 속 대 상	아들위주의 상속	1. 재산은 아들에게만 상속한다. 2. 재산은 장남에게만 상속한다. 3. 여자의 상속분이 남자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4. 재산상속은 남자에게 특별히 많이 주어야 한다. 5. 재산상속을 가장 많이 받은 자녀가 제사를 모셔야 한다.	5	.82
	직계혈연 위주의 상속	6. 재산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종가집에 상속한다. 7.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에게 상속한다. 8.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 재산을 상속한다. 9. 가계내 재산상속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4	.71
상 속 분	균분상속	10. 재산은 자녀에게 균분상속한다. 11. 재산상속은 상속법에 규정된 데로 실시한다. 12. 개정된 상속법에 대체로 만족한다.	3	.72
	임의상속	13. 재산상속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하고싶다. 14. 재산은 생전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한다. 15. 재산상속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	3	.71
전 체			15	.78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결과해석 과정에 보충자료로 이용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필요성에 대한 의식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재산상속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중 69.7%가 재산상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0.3%는 재산상속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 재산상속이 필요한 이유로는 '자녀의 가계경제력에 도움'이 6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27.4%, '자녀의 사회적 지위향상 수단'이 9.4%를 나타냈다. 재산상속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간의 갈등 야기 유발'이 43.5%, '자녀의 독립성 개발'이 34.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사회환원으로 경제적 불균등 방지'가 14.1%, '노후대비'는 7.6%로 중노년기 기혼남녀 대부분이 재산의 사회적 환원

〈표 3〉 심층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성 별	남	남	남	여
연 령	67	70	65	64
교육수준	대학원졸	대졸	고졸	고졸
은퇴전 직업	대기업 임원	교사	자영업	공무원
자 산	10억원	3억5천만원	5억	1억
종 교	기독교	기독교	불교	무
거 주 지	서울	서울	경남 밀양	서울
출생순위	차남	장남	외동아들	장녀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확대가족	확대가족
막내자녀결혼여부	기혼	기혼	미혼	기혼

〈표 4〉 재산상속필요성에 대한 의식

변 인	문 항	구 분	빈 도	백분율(%)
재산상속 필요성	재산상속 필요여부	필 요	212	69.7
		불필요	92	30.3
		전 체	304	100
필요한 이유	자녀의 가계경제력에 도움 자녀의 사회적 지위향상 수단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자녀의 가계경제력에 도움	134	63.2
		자녀의 사회적 지위향상 수단	20	9.4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3	27.4
		전 체	157	100
필요하지 않은 이유	자녀의 독립성 개발 가족간의 갈등야기 유발 노후대비 사회환원으로 경제적 불균등 방지	자녀의 독립성 개발	32	34.8
		가족간의 갈등야기 유발	40	43.5
		노후대비	7	7.6
		사회환원으로 경제적 불균등 방지	13	14.1
		전 체	92	100

이나 장기적 노후계획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상속필요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네가지 사례 중에서 〈사례 1〉, 〈사례 3〉, 〈사례 4〉의 경우는 재산상속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사례 2〉의 경우에서만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자녀의 독립심을 키워주고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속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

사례 1 : “상속, 그럼 꼭 필요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앞만 보고 일했는데. 다 자식들 편안하고 멋떳하게 살수 있도록 해줄려고 그랬지..... 자식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시작부터 결정나는거야.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야만 출세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상속은 필요한거야.”(남, 67세)

사례 3 : “당연히 줘야지. 있는 재산 죽어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한테서 땅이나 집 물려받는 친구들이 부러웠지. 나도 그랬다면 하고 싶었던 공부도 더 할 수 있었을텐데. 내 아들에게는 그런 설움 안받게 하고 싶어.”(남, 65세)

사례 4 : “나는 (상속)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모로써 당연한거 아니겠어. 남들처럼 그렇게 가고싶어하던 유학도 못보내줘서 얼마나 마음 아팠다구..... 별루 가진건 없어도 전부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그게 애미 심정이야.”(여, 64)

본 사례에서 재산상속이 필요한 이유를 종합해 보면, 자녀의 사회적 출세와 성공,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 설움을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심정, 자녀의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영위, 평생 고생하고 살아온 배우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상속이 단순히 가족에게 재산 즉 금전적인 것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이상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달리 재산상속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사례 2 : “난 (재산상속) 반대야. 괜히 물려줘 봐야 부모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히 받는걸로 안다니까. 그리고 형 더 많이 주네. 자기가 적네 하면서 불만만 가지고 말이야. 생전에 찾아오지도 않다가 사업이 힘들어지면 한번만 더 도와달라고, 사업재기하면 몇 배로 효도하겠다고.....”(남, 70세)

〈사례 2〉에서는 재산의 사회환원을 원하였으나 아직도 이러한 의식은 전체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재산상속으로 야기되는 가족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은 여전히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의식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의식은 〈표 5〉와 같다.

재산상속시기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본인생전’이 57.5%로 ‘본인사후’ 42.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생전’ 중에서는 ‘본인이 원할 때’가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녀가 원할 때’가 13.3%, ‘막내자녀 결혼 후’가 9.3% 순이었다. 상속방법에 있어서는 ‘유언’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관습’이 30.6%, ‘법적 규정’이 24.3%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산상속시기는 괴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가 사망한 후에 상속하고자 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홍영립(1997)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사후상속이 자녀들의 의타심과 경제적 독립심을 강화시킬 수 있고 자녀로부터 노후부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유리하지만, 아직도

〈표 5〉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의식

변 인	문 항	구 분	빈 도	백분율(%)
재산상속 시기 및 방법	상속시기	본인생전	본인이 원할 때	105
			자녀가 원할 때	40
			막내자녀 결혼 후	28
			총 계	173
		본인사후	128	42.5
	상속방법	전 체	301	100
		유언	137	45.1
		법적규정	74	24.3
		사회적 관습	93	30.6
		전 체	304	100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님 생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상속방법에서는 법적인 규정보다는 유언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상속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김종호, 1985; 문영소, 1996; 배종열, 1997)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가지 사례중에서 〈사례 1〉과 〈사례 4〉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하기를 원하였다. 즉 재산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노후에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생전상속보다 사망상속을 더 원하였으며, 이 경우 유언을 작성하여 따르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생전에 상속을 한 경우 노후보장제도가 미약한 우리 사회에서는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 이상시에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부양자에 대한 확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상속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사례 1 : “내 친구중에 더 나이들기 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마누라와 오붓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생각으로 퇴직한 후에 퇴직금이랑 보험금을 모두 자녀에게 주고 달랑 살 집 한채만 남겨 두었는데, 글쎄 갑자기 마누라가 암에 걸려서 할 수 없이 집을 팔았지. 그리고는 큰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돈없고

아픈 부모라서 그런지 같이 사는게 너무 눈치가 보인다는군. 남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난 죽기전에는 물려주지 않을꺼야. 내가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 큰소리도 치고 그러지. 죽기 전에 유언장 작성해 놓았다가 골고루 나눠줄 생각이야.”(남, 67세)

사례 4 : “(재산이) 많진 않지만 내가 죽은후에 나눠주고 싶어. 지금 물려주면 아무래도 자식신세를 지게 되는데 눈치보며 살고 싶지는 않아. 재산이 작더라도 몇몇하게 죽은 후에 유언으로 상속할꺼야. 계모임 나가면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할려고 해.”(여, 64세)

〈사례 3〉은 자녀들이 결혼한 후 재산이 필요할 때 상속하기를 원하였으며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장남 위주의 상속을 하고자 하였다.

사례 3 : “내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면 물려줄 생각이야. 오래 가지고 있음 위해, 나이들면 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지. 필요할 때 주는 게 좋지. 결혼하고 자식생기면 혼자 벌어서 살기 빠듯할꺼야..... 그냥 남들처럼 큰자식 좀 더 많이 주고, 왜냐구 제사도 지내야 하고 우리 집 안 이끌고 갈 대주니까 넉넉하게 줘야지. 법 아

무소용없어. 떨들이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시집갈 때 해주는 걸로 충분하지.”(남, 65세)

〈사례 2〉는 재산상속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으며,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효율적인 시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사례 2 : “상속 그거 잘못된 제도야. 다들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그것보다 외국처럼 사회에 환원하는게 보편화되어야지.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물려서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 못하게 막아야..... 언제하면 좋겠냐구. 그런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남, 70세)

3.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의식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하위영역 4개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들위주의 상속이 5점 만점에 2.77점, 직계혈연위주의 상속이 2.73점, 균분상속이 2.42점, 임의상속이 1.92점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들위주의 상속중 ‘재산상속을 가장 많이 받은 자녀가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문항이 5점 만점에 평균 3.15점으로 대체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며 ‘재산은 아들에게만 상속한다’는 문항은 평균 2.14점으로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혈연

〈표 6〉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의식 (N=304)

번 인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아들위주의 상속	1. 재산은 아들에게만 상속한다.	2.14	1.09
	2. 재산은 장남에게만 상속한다.	2.99	1.23
	3. 여자의 상속분이 남자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2.94	1.21
	4. 재산상속은 남자에게 특별히 많이 주어야 한다.	2.66	1.27
	5. 재산상속을 가장 많이 받은 자녀가 제사를 모셔야 한다.	3.15	1.22
	전 체	2.77	.92
직계혈연 위주의 상속	6. 재산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종가집에 상속한다.	2.46	1.12
	7.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에게 상속한다.	2.85	1.21
	8.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 재산을 상속한다.	2.26	1.02
	9. 가계내 재산상속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3.33	1.05
	전 체	2.73	.74
균분상속	10. 재산은 자녀에게 균분상속한다.	2.48	1.09
	11. 재산상속은 상속법에 규정된 대로 실시한다.	2.37	1.12
	12. 개정된 상속법에 대체로 만족한다.	2.40	1.07
	전 체	2.42	.90
임의상속	13. 재산상속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하고싶다.	1.64	1.16
	14. 재산은 생전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한다.	1.78	1.13
	15. 재산상속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	2.34	1.10
	전 체	1.92	1.88

(5점만점)

위주의 상속에서는 ‘가계내 재산상속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이 5점 만점에 평균 3.33점으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여전히 전통적인 상속관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균분상속에서 ‘재산은 자녀에게 균분상속한다’(2.48), ‘개정된 상속법에 대체로 만족한다’(2.40), ‘재산상속은 상속법에 규정된 데로 실시한다’(2.37)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2.5점 미만의 분포를 보여 균분상속을 원하지 않았으며, 개정된 상속법에 만족하거나 상속법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임의상속에서는 ‘재산상속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하고 싶다’는 문항이 5점 만점에 2.34점이고, ‘재산상속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하고 싶다’와 ‘재산은 생전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한다’는 문항은 5점 만점에 각각 1.64점과 1.78점으로 나타나서, 임의상속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또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 Duncan's Multiple Ranges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의식에서는 균분상속만이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균분상속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성일수록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한다는 문영소(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아들위주의 상속($p<.001$), 직계혈연위주의 상속($p<.001$), 임의상속($p<.01$), 균분상속($p<.05$)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50세 이상-55세 미만인 기혼남녀와 60세 이상인 기혼남녀가 55세 이상-60세 미만인 기혼남녀보다 아들위주의 상속과 직계혈연위주의 상속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재산상속을 한다는 배종열(1997)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연령이 낮은 집단도 아들위주의 상속과 직계혈연위주의 상속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

리 사회가 여전히 아들중심의 부계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임의상속에서는 60세 이상의 기혼남녀가 60세 미만의 기혼남녀보다 임의상속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균분상속에서는 60세 미만의 기혼남녀가 60세 이상의 기혼남녀보다 균분상속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상속을 할 때에도 이성적이기 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임의상속을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의식에서는 아들위주의 상속($p<.001$), 균분상속($p<.01$), 임의상속($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졸 이하인 집단이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보다 아들위주의 상속과 임의상속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분상속에 대해서는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이 중졸 이하인 집단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남녀차별이 적고 비교적 균등하다는 홍공숙 외 2인(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종교에 따른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의식에서는 아들위주의 상속($p<.01$)과 균분상속($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불교와 무교인 집단이 기독교와 천주교인 집단보다 아들위주의 상속을 하고자 하였으며, 반대로 기독교와 천주교인 집단이 불교와 무교인 집단보다 균분상속을 더 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교나 무교인 가족 대부분이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인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장남에게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주지에 따른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의식에서는 직계혈연위주의 상속($p<.001$), 임의상속($p<.001$), 아들위주의 상속($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농촌에 거주하는 집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아들위주의 상속과 직계혈연위주의 상속을 하고자 하였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대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집단이 임의상속을 더 원하였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아들위주의 상속만이 유의한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 (N=304)²⁾

변인	구분	빈도	재산상속대상				상속분				
			아들위주의 상속		직계혈연위주의 상속		균분상속		임의상속		
			M	D	M	D	M	D	M	D	
성별	남	149	2.87		2.76		3.32		2.99		
	여	155	2.69		2.69		3.52		2.85		
	F값 및 유의도		1.73		.89		-1.99*		1.41		
연령	50세 이상~55세 미만	47	2.86	B	2.86	B	3.56	B	2.88	A	
	55세 이상~60세 미만	150	2.54	A	2.55	A	3.51	B	2.76	A	
	60세 이상	107	3.06	B	2.91	B	3.23	A	3.17	B	
교육 수준	F값 및 유의도		10.96***		8.44***		3.89*		7.34**		
	중졸 이하	59	3.28	B	2.91		3.12	A	3.27	B	
	고 졸	129	2.74	A	2.73		3.41	B	2.82	A	
사회 여부	전문대졸 이상	116	2.56	A	2.62		3.59	B	2.86	A	
	F값 및 유의도		13.13***		2.89		5.32**		5.89**		
	은 퇴	88	2.61		2.67		3.41		2.98		
인 구 구 학 적	현 직	216	2.84		2.75		3.42		2.90		
	F값 및 유의도		-1.93		-.78		-.09		.76		
	1억 미만	36	2.94		2.91		3.32		3.01		
인 구 자산	1억 이상~5억 미만	158	2.78		2.71		3.48		2.97		
	5억 이상~10억 미만	52	2.57		2.63		3.33		2.86		
	10억 이상	52	2.83		2.70		3.40		2.78		
학 적	F값 및 유의도		1.30		1.05		.53		.83		
	종교	기독교	65	2.54	A	2.54		3.67	B	2.91	
		천주교	39	2.40	A	2.71		3.75	B	2.91	
변 인		불교	107	2.98	B	2.84		3.20	A	2.83	
		무	93	2.86	B	2.72		3.36	A	3.04	
F값 및 유의도		5.88**		2.25		5.89**		.90			
거주지	대도시	163	2.75	A	2.66	A	3.40		3.15	B	
	중소도시	109	2.69	A	2.68	A	3.48		2.57	A	
	농촌	32	3.19	B	3.23	B	3.33		2.97	B	
출생순위	F값 및 유의도		3.92*		8.56***		.44		15.56***		
	장남/장녀	118	2.67	AB	2.70		3.46		2.83		
	외동아들/외동딸	25	2.52	A	2.84		3.60		2.89		
가족형태	차남이하/차녀이하	161	2.89	B	2.72		3.36		2.99		
	F값 및 유의도		3.05*		.35		.99		1.16		
	핵가족	123	2.62	A	2.61	A	3.48		2.78	A	
학 적	부모가 있는 확대가족	51	2.80	A	2.94	B	3.46		2.81	A	
	자녀가 있는 확대가족	130	2.91	A	2.75	AB	3.35		3.09	B	
	F값 및 유의도		3.05*		3.82*		.67		4.56*		
학 적	기 혼	96	3.08		2.99		3.27		3.04		
	미 혼	208	2.63		2.60		3.49		2.87		
	F값 및 유의도		4.01***		4.37***		-1.81		1.63		

* p<.05 ** p<.01 ***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 자산의 경우 304명 중 298명이 응답.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재산상속필요성과 상속시기 및 상속방법은 일반적인 특성과 심층면접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설명가능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 본 논문에서 생략하였음.

차이($p<.05$)를 보였다. 즉 차남이하와 차녀이하인 집단이 외동아들과 외동딸인 집단보다 아들위주의 상속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남인 집단이 다른 출생순위인 집단에 비해 아들위주의 상속을 한다는 문영소(199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동아들과 외동딸인 집단의 경우 재산상속에 있어서 불평등한 위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남이하와 차녀이하인 집단보다 비교적 평등한 재산상속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형태에 따른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의식에서는 아들위주의 상속, 직계혈연위주의 상속, 임의상속에서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냈다. 즉 부모가 있는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직계혈연위주의 상속을 원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확대가족이 핵가족 이거나 부모가 있는 확대가족보다 임의상속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재산상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계혈연을 중시한 상속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막내자녀 결혼여부에 따른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 분에 대한 의식중 아들위주의 상속, 직계혈연위주의 상속에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즉 막내자녀가 결혼을 한 집단이 미혼인 집단보다 아들위주의 상속과 직계혈연위주의 상속을 더 많이 원하였다. 이것은 딸이 결혼을 하면 자신의 자녀라는 생각보다는 남의 집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져 막내자녀가 미혼일 때보다 아들, 직계혈연위주의 상속을 하기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례 1>은 배우자 우선 상속을 원하며 자녀에게는 균분상속을 하고자 하였으며, <사례 3>과 <사례 4>는 딸은 상속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아들위주의 상속을 원하며, 특히 <사례 3>은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고, 차남에게는 결혼자금 형태의 상속만을 하고자 하였다. <사례 2>는 재산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례 1 : “내 생각으로는 공평하게 하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애.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

하고 그런게 어디있어. 다 중요하지. 그런데 집 사람을 1순위로 해야지. 자식들이야 시집, 장가 가서 자기네 가족도 생기고 밖에서 돈버니까 능력도 있고 죽어도 걱정 안 해. 그치만 아내는 걱정이야. 혼자 어떻게 살겠어. 돈이라도 넉넉하게 있어야 덜 서글프지 않겠어.”(남, 67세)

사례 3 : “장남이 제일 우선이지. 내가 더 늙어서 자리보존하게 되면 장남이 모시지 않겠어. 나도 제일 마음 편하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야 하고, 집안 대소사도 신경써야 하고 아무튼 장남이 힘이 있어야지. 장남이 잘되면 밑에 애들은 자연적으로 잘되겠지.”(남, 65세)

사례 4 : “아들이 1순위지. 아들은 집안을 이끌 어갈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상속도 아들에게 해야겠지. 늙어서 기댈수 있는곳은 아들네 밖에 더 있겠어. 그럴때 빈손으로 (아들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어.”(여, 64)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례 1>의 경우는 일생의 동반자였던 배우자에게 상속을 일임하고 자녀에게는 균분상속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집단일수록 균분상속을 하고자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사례 3>과 <사례 4>는 각각 장남, 아들을 재산상속인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는 제사나 호주계승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계계승이 이루어지는 아들 특히 장남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재산상속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69.7%로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즉 현대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재산이전방법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자녀의 경제적인 독립심을 약화시키고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상속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자녀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간의 빈번한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재산상속계획으로 가족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상속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는 생전상속과 유언상속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상속의 경우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심을 고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이 재산을 가능한 한 늦게까지 보유함으로써 노후대비에 보다 안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보장제도가 미약한 우리사회에서는 사전상속보다는 사후상속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전상속의 경우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 이상시에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부양자에 대한 확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상속법에 의한 상속보다는 유언상속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른 상속을 원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상속법 개정이 필요하며, 아들위주의 상속에서 균분상속으로 고령층의 의식전환과 관심을 위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아들위주의 상속과 직계혈연 위주의 상속에 대한 의식은 각각 5점 만점에 평균 2.77점과 2.73점으로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균분상속과 임의상속은 각각 2.42점과 1.92점으로 대체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하고 특별히 힘들거나 재산이 필요한 자녀 또는 자신에게 고마운 특별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빈번한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는 아직도 자녀, 특히 장남위주의 불균등상속이 보편적임을 말해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재산상속대상 및 상속분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거주지, 출생순위, 가족형태, 막내자녀 결혼여부가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와 천주교인 집단이 불교와 무교인 집단보다 균분상속을 원하며, 농촌에 거주할수록, 확대가족일수록, 막내자녀가 기혼일 때 아들위주, 직계혈연위주의 상속을 원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있는 확대가족일 경우 임의상속을 더 원하였다. 즉 재산상속대상이나 상속분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의사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특유의 가족제도, 가족구조,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산상속의식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이 과거와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행 상속법과의 연관성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어 감에 따라 현대인의 재산상속의식이 서구화되고 평등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산상속의식은 상속시기에 관한 의식을 제외하고는 가족법에 나타난 상속제도와는 달리 여전히 과거와 별차이가 없는 전통적인 의식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의식이 상속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재산상속의식과 재산상속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재산상속이 미칠수 있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관계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보완한 보다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재산상속의식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주제에 합당한 다각적인 척도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현상황을 잘 반영하고, 심도있는 재산상속의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

속의식에만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으나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상속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사회 환원과 같은 다른 방향의 재산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산상속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상속을 실시한 후 나타날 수 있는 가족문제, 가족갈등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재산상속 의식과 실태를 비교하는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교문사.
- 김엘립(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 한국여성개발원.
- 김종호(1985). 농촌가정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경산군 용성면 도덕1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수(2000). 친족·상속편. 서울: 법문사.
- 문영소(1996). 한국가족의 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희·정주원(2000). 가계내 재산상속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Ethnographic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2), 91-107.
- 배종열(1997). 현대 한국가족의 재산상속관행-대구시 남자 가구주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영호(1990). 상속순위와 상속분. 한국가족법학회

편. 가족법연구 4, 214-237.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여중철(1980). 제사분할상속에 관한 일고.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인류학연구 1, 21-54.

이가옥(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이경희(1988). 기억분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광규(1990). 한국의 가족과 종족. 서울:민음사.

조정문(1990). 미국내 한국계 이민자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 87-112.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6). 1940년대 전후의 농촌가족의 상속실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법문사.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홍공숙·김순미·김연정(1995). 미국노인의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45-55.

홍영림(1997). 재산상속연구. 대우경제연구소 월간경제 7월호.

Cooney, T.M. & Uhlenberg, P.(1992). Support from parents over the life course: The adult child's perspective. *Social Forces* 71(1), 63-84.

Cox, 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508-546.

Davies, J.B.(1996).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Menchick, P.L.(Ed.). *Household and Family Economics*, 47-82.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Dordrecht/London.

Kottlikoff, L.J. & Spivak, Avia(1991). The family as an incomplete annual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9(3), 396-410.